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65
----------	-------

발의연월일 : 2026. 6. 19.

발 의 자 : 민병덕 · 김승원 · 조계원
김영배 · 김문수 · 이해민
김남근 · 김 윤 · 한준호
김태년 · 임오경 · 이수진
박해철 · 이훈기 · 박홍배
주철현 · 김영호 · 이강일
안도걸 · 이용우 · 이주희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 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판로 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자 판매를 장기간 제한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관행이 수급사업자의 자립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여 원천 금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자생력

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2항제4호 신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에게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의 판매 및 납품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특약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변경·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u>4.</u> (생 략)</p> <p>③ 제2항제1호부터 <u>제3호</u>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u>제4호</u>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p>	<p>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에게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의 판매 및 납품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u></p> <p><u>5.</u>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③ -----<u>제4호</u>----- ----- -----<u>제5호</u>----- ----- -----.</p>